민법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ㄷ - ㄴ - ㄱ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주위토지통행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2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0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4,000만원

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④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주택관리사보

2020년 1차 2교시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①	⑤	④	③	⑤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②	②	①	⑤	③	④	④	③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⑤	②	⑤	⑤	③	③	④	②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①	⑤	④	①	①	③	④	③	②

공식 공개 시험지 · 봄기출 문항별 해설

1 민법총칙 · 관습법 정답 ②

① O 해설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생길 수 있어,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렇게 인정된 물권이다(민법 제185조).

② X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도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49000).

③ O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까지 얻지 못한 관행이라 법원(法源)이 아니고, 임의규정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의사 보충의 기준이 될 뿐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④ O 해설 민사 재판의 법원 순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곳을 메우는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민법 제1조).

⑤ O 해설 관습법이라도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적용 시점의 헌법 중심 법질서와 어긋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 종원을 성년 남자로 한정한 관습이 그 예다(대판 2002다1178).

2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정답 ①

① O 해설 강행법규를 어긴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ㄱ만 틀린 설명이고 ㄴ·ㄷ·ㄹ은 판례와 같다(대판 2003다1601).

② X 해설 ㄷ은 판례와 같다 — 일반보증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보증인 책임을 예외적으로 줄일 수 있어 고를 것이 아니고, 틀린 ㄱ이 빠졌다(대판 2003다45410).

③ X 해설 ㄴ은 판례와 같다 —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고르면 안 된다(대판 94다42129).

④ X 해설 ㄴ(신의칙 위반은 직권조사사항)과 ㄷ(일반보증의 책임 제한)은 모두 판례와 같은 설명이고, 정작 틀린 ㄱ이 빠졌다.

⑤ X 해설 ㄹ도 판례와 같다 —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를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틀린 ㄱ이 빠졌다(대판 2005다5812).

3 민법총칙 · 형성권 정답 ③

① O 해설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0조, 제141조).

② O 해설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라 조건·기한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③ X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다 — 재판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인 채권자취소권과 구별한다(민법 제404조).

④ O 해설 약정해지권도 상대방에 대한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⑤ O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4 민법총칙 · 주소 정답 ①

① X 해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민법은 복수주소를 인정하므로, 생활 근거가 여럿이면 주소도 여럿일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② O 해설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머무는 곳인 거소를 주소로 삼아 법률관계를 처리한다(민법 제19조).

③ O 해설 특정 거래를 위해 당사자가 가주소를 정하면 그 거래에 관해서만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④ O 해설 법인의 주소는 지점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한다(민법 제36조).

⑤ O 해설 외국에 살아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도 국내에 거소가 있으면 그곳을 국내 주소로 삼는다(민법 제20조).

5 민법총칙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정답 ⑤

① X 해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성년이 되기 전에도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② X 해설 추인은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乙은 甲이 미성년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5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이면 확답 촉구는 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하고, 甲 본인에게는 성년이 된 뒤에야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제2항).

④ X 해설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계약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⑤ O 해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6 민법총칙 · 부재자의 재산관리 정답 ④

① O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 주소를 떠난 자연인을 위한 것이라, 기관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은 부재자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② O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뜻과 관계없이 법원이 정한 법정대리인이라, 관리행위를 넘으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③ O 해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정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청구에 따라 앞서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민법 제22조 제2항).

④ X 해설 처분허가 결정이 뒤에 취소되어도 그 취소는 장래를 향할 뿐이라, 허가 당시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남는다(민법 제25조, 대판 4291민상636).

⑤ O 해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서류는 관리인에게 보내야 하므로, 부재자 본인에게 한 공시송달은 무효다(대판 68다2021).

7 민법총칙 · 법인의 이사 정답 ③

① X 해설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뽑는다(민법 제63조, 제64조).

② X 해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정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대표다(민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1항).

③ O 해설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으면 그 밖의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41741).

7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 대표이사가 맺은 계약은 절대 무효이고, 뒤에 신청이 취하되어도 집행 효력은 장래를 향해 없어질 뿐이다(대판 2008다4537).

⑤ X 해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8다26187).

8 민법총칙 · 법인 정답 ⑤

① O 해설 이사는 법인의 필수 상설기관이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57조, 제66조).

② O 해설 법인이 목적 밖 사업, 허가조건 위반,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③ O 해설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이고, 감사 임면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④ O 해설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는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56조, 대판 91다26850).

⑤ X 해설 정관은 자치법규라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새긴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9다12437).

9 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정답 ②

① O 해설 청산절차 규정은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강행규정이고, 이에 어긋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79다2036, 대판 94다13473).

② X 해설 법인이 활동하는 동안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제37조).

③ O 해설 청산인에게는 이사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이 준용되어, 사단법인 청산인도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제70조 제1항).

④ O 해설 청산 중 법인은 빨리 정리하려고 변제기 전 채권도 갚을 수 있고, 조건부·가액 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뽑은 감정인의 평가로 갚는다(민법 제91조).

⑤ O 해설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판 79다2036).

10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 정답 ③

① O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이 지분 없이 단체로 갖는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② O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 말고는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하므로, 대표자의 포괄위임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대판 94다18522).

③ X 해설 고유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 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이 된다(대판 93다27703).

④ O 해설 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뒤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얻은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지만, 성립 전에 설립자 개인이 얻은 것은 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대판 2007다37394).

⑤ O 해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도 독자적 규약과 기관을 두고 독립해 활동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대판 2006다60908).

11 민법총칙 · 물건 정답 ⑤

① O 해설 지상권·전세권은 1필 토지나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등기할 때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2조 제1항).

② O 해설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인 특수한 유체물로서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③ O 해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지상·지하에 미치고, 그 범위를 넘는 공간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12조).

④ O 해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⑤ X 해설 독립 건물이 못 된 채 공사가 멈춘 정착물은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 수급인은 여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결 2007마98).

12 민법총칙 · 주물과 종물 정답 ②

① O 해설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는 데 이바지할 뿐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판 97다3750).

12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X 해설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라,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

③ O 해설 종물이 주물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빼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대판 2009다76546).

④ O 해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저당부동산에 쓰이더라도 남의 소유인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대판 2007다36933).

⑤ O 해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358조, 대판 92다24950).

13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답 ②

① X 해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미등기로 되판 전매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3다296).

② O 해설 부첩관계가 끝나면 효력을 잃게 한 증여는 부첩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불법조건이라,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대판 66다530).

③ X 해설 매도인이 낼 공과금을 매수인이 떠안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일 뿐, 불법조건이나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3다296).

④ X 해설 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근저당권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 문제로 무효일 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08조, 대판 2003다70041).

⑤ X 해설 도박빚을 갚으려고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까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

14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①

① O 해설 무상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ㄴ) 이 둘을 고른다(대판 99다56833, 대판 94다10900).

14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ㄷ이 끼었다 —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고,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104조).

③ X 해설 ㄹ이 끼었다 — 불공정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옳은 ㄱ이 빠졌다(대판 2011다53683).

④ X 해설 ㄷ·ㄹ이 함께 끼었다 —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 불공정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ㄴ도 빠졌다.

⑤ X 해설 ㄱ이 빠지고 ㄷ·ㄹ이 끼었다 — 대가 없는 증여는 애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ㄱ의 규칙이다(대판 99다56833).

15 민법총칙 · 착오 정답 ⑤

① X 해설 목적물 하자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따로 취소할 수 있어, 두 제도는 경합한다(민법 제109조, 대판 2015다78703).

② X 해설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하고, 착오자가 중과실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5다6228).

③ X 해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부담 등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④ X 해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법이 허용한 취소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어서,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7다13023).

⑤ O 해설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할 몫이라,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7다74188).

16 민법총칙 · 대리 정답 ③

① X 해설 사기를 당했는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② X 해설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 甲에게 있고, 대리인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취소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제140조).

16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본인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골랐더라도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④ X 해설 위임은 신뢰관계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 손해만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⑤ X 해설 상대방의 사기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와 착오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한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17 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정답 ④

① X 해설 의사표시는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② X 해설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발송자가 도달을 증명해야 하고, 추정은 등기·내용증명우편에만 인정된다(대판 2000다25002).

③ X 해설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읽어 알았을 필요는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대판 82다카439).

④ O 해설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뿐이라, 피특정후견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⑤ X 해설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 등을 따로 정했다면 사임서가 도달했어도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사임의 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7다17109).

18 민법총칙 · 대리와 복대리 정답 ④

① O 해설 임의대리권은 본인 사망 같은 공통 소멸사유 외에도 그 바탕이 된 위임 등 원인관계가 끝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제127조).

② O 해설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락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124조).

③ O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힌 의사표시는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2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18 해설 계속 정답 ④

④ X 해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고, 언제나 뽑을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120조, 제122조).

⑤ O 해설 매매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맡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과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까지 가진다(대판 91다43107).

19 민법총칙 · 표현대리 정답 ③

① O 해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과실도 없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25조).

② O 해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 상호대리권이 있어, 그 범위를 넘은 거래에 제126조를 적용할 수 있다(민법 제827조, 대판 80다2077).

③ X 해설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뽑은 복대리인을 시켜 권한 밖의 행위를 해도, 그 대리인의 기본대리권을 바탕으로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④ O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를 할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3828).

⑤ O 해설 대리권이 사라진 뒤 옛 대리인이 세운 복대리인과 거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로 본인이 책임진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

20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정답 ④

① O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만 추인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0조, 대판 81다카549).

② O 해설 본인이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

③ O 해설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행위로 권리를 이어받은 승계인에게 해도 되고, 방식에도 제한이 없다(대판 80다2314).

④ X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기망으로 무권대리가 되었어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민법 제135조, 대판 2013다213038).

20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O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바꿔 추인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계약을 떠안기게 되므로, 상대방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다(대판 81다카549).

21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정답 ①

① X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41조).

② O 해설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③ O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④ O 해설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는 합의한 뒤로만 효력이 있어, 그 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없어야 하고 가등기 시점으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⑤ O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아 침해될 이익도 없으므로, 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22 민법총칙 · 기간 정답 ⑤

① X 해설 ㄱ이 가장 늦다 —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초일을 넣어 6월 5일 24시에 끝나고, 순서는 ㄷ(6월 3일 0시)·ㄴ(6월 4일 24시)·ㄱ이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② X 해설 ㄱ을 맨 앞에 둔 것이 잘못이다 — 0시에 시작해 초일을 넣어도 4일째인 6월 5일 24시에 끝나 셋 중 가장 늦다(민법 제157조).

③ X 해설 ㄴ을 맨 앞에 둔 것이 잘못이다 — 1개월은 기산일 5월 5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인 6월 4일 24시에 끝나, 6월 3일 0시에 끝나는 ㄷ보다 늦다(민법 제160조 제2항).

④ X 해설 ㄷ이 가장 이르다 — 6월 10일부터 거꾸로 센 1주일은 초일을 빼고 6월 9일부터 7일을 세어 6월 3일 0시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⑤ O 해설 ㄷ은 6월 3일 0시, ㄴ은 초일을 빼고 5월 5일부터 1개월이라 6월 4일 24시, ㄱ은 0시 시작이라 초일을 넣어 6월 5일 24시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23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중단 정답 ②

① O 해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을 잃지만 최고의 효력은 남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② X 해설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고의 소 제기 때가 아니라 권리자인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때 생긴다(민법 제168조, 대판 2011다78606).

③ O 해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④ O 해설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라, 상대방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⑤ O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절대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 채무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대판 2010다91886).

24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 정답 ⑤

① X 해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상태에 붙는 권리라 지배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② X 해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는 권리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③ X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 따르는 상린관계상 권능이라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219조).

④ X 해설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214조).

⑤ O 해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물을 잃고 얻는 구상권은 보통의 채권이라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162조 제1항).

25 물권법 · 등기의 추정력 정답 ⑤

① X 해설 ㄴ·ㄷ이 빠졌다 — 지분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 등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양수했다는 보존등기 명의인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다(대판 82다카134, 대판 82다카707).

25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ㄱ·ㄷ이 빠졌다 —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 명의라는 전제에 서므로, 신축자가 아니거나 전 소유자에게서 샀다는데 그가 부인하면 추정이 깨진다(대판 95다30734).

③ X 해설 ㄴ이 빠졌다 — 공유지분 분자의 합계가 분모를 넘으면 어느 지분등기가 실체와 맞는지 알 수 없어 적법 추정을 받지 못한다(대판 82다카134).

④ X 해설 ㄱ이 빠졌다 — 건물을 새로 짓지 않은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추정을 받지 못한다(대판 95다30734).

⑤ O 해설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닐 때, 지분 분자의 합이 분모를 넘을 때,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할 때 모두 추정력이 깨진다(대판 95다30734, 대판 82다카134, 대판 82다카707).

26 물권법 · 부동산물권변동 정답 ③

① X 해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87다카2431).

② X 해설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추인의 형태로도 인정된다(대판 2006다50055).

③ O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 한 중간생략등기는 허가가 실제 거래와 달라 무효다(대판 96다22464).

④ X 해설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이 넘어오고, 처분하려면 그때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⑤ X 해설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가 합의해 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27 물권법 · 공동소유 정답 ③

① O 해설 합유자는 조합체가 계속되는 동안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3조).

② O 해설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끝나고, 해산 뒤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

27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X 해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사원 각자는 정관 등에 따라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④ O 해설 공유자의 지분은 약정이나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⑤ O 해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264조, 제265조).

28 물권법 · 전세권 정답 ④

① X 해설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 전세금 지급으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303조 제1항, 대판 94다18508).

② X 해설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없다(민법 제316조 제1항).

③ X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와 통상 수선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상환받는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④ O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권이 소멸해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추심한다(대판 98다31301).

⑤ X 해설 전세권의 양도·임대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29 물권법 · 유치권 정답 ②

① O 해설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② X 해설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간이변제충당도 청구한다(민법 제322조).

③ O 해설 유치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④ O 해설 채무자는 유치물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29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O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들였으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한다(민법 제325조).

30 물권법 ·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④

① O 해설 丙은 경매로 건물을 사면서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고, 경매는 법률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가 필요 없다(민법 제187조, 대판 2013다43345).

② O 해설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丙에게 토지소유자 甲은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민법 제279조).

③ O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되고, 다만 그 범위는 옛 건물 기준이다(대판 96다40080).

④ X 해설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가 성립할 수 없어,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⑤ O 해설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만 넘기면 양수인 丁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甲에게 주장할 수 없고, 丙을 대위해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87조, 대판 84다카1131).

31 물권법 · 저당권 정답 ②

① O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② X 해설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만 지므로 사전구상권이 없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구상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대판 2009다19802).

③ O 해설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차임 같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④ O 해설 제3취득자 변제 제도는 소유권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쓸 수 있어, 그들이 피담보채권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64조).

31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O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 없이 저당권만 넘기거나 입질할 수 없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간다(민법 제361조).

32 물권법 · 공동저당 정답 ①

① O 해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면 안분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배당해, 甲은 X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다 받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대판 2008다41475).

② X 해설 1,000만원은 X에서 甲이 5,000만원을 받고 남아 2번 저당권자 丁에게 가는 돈이지, 甲이 Y에서 받는 몫이 아니다(대판 2008다41475).

③ X 해설 2,000만원은 5,000×4,000/10,000으로 매각대금 비율대로 나눈 값인데,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이렇게 안분하지 않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대판 2008다41475).

④ X 해설 3,000만원은 Y 매각대금에서 2번 저당권자 戊가 받는 금액이다 — 甲은 X에서 채권 전액을 받아 Y에서 받을 것이 없다(대판 2008다41475).

⑤ X 해설 4,000만원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서 먼저 받는다고 순서를 거꾸로 본 값이다 —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책임진다(대판 2008다41475).

33 채권법 · 이행불능 정답 ⑤

① O 해설 계약 당시 이미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 문제된다(민법 제535조).

② O 해설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최고해도 이행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③ O 해설 채무자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생기면 채무불이행이라,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④ O 해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⑤ X 해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도 그 손해를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민법 제551조).

34 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정답 ④

① X 해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따진다(대판 2000다73049).

② X 해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만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하고, 확정 뒤에는 될 수 있다(대판 98다58016).

③ X 해설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그 결과가 패소라도 채권자는 같은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92다32876).

④ O 해설 피보전채권 이행기 전의 대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시효중단 같은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⑤ X 해설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지키려는 대위는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91다483).

35 채권법 · 청약과 승낙 정답 ①

① O 해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구속되므로 3월 10일 0시에도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② X 해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3월 9일에 도달했다면 그 전 발송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민법 제531조).

③ X 해설 기간이 지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함께 새 청약으로 보므로, 甲이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4조).

④ X 해설 기간 뒤에 도달한 연착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0조).

⑤ X 해설 같은 내용의 청약이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곧 나중 도달일인 3월 6일에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36 채권법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①

① O 해설 ㄱ만 동시이행이다 — 가압류등기가 남은 부동산을 판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가압류 말소를 함께 해 주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0다8533).

36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ㄷ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 담보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 생기는 의무라 변제가 먼저이고,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대판 84다카781).

③ X 해설 ㄴ이 끼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의 일이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대판 2005다4529).

④ X 해설 ㄴ·ㄷ은 모두 한쪽이 먼저 이행할 관계이고(보증금 반환·채무 변제가 먼저), 정작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

⑤ X 해설 ㄱ에 더해 ㄴ·ㄷ까지 넣은 것이 잘못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담보가등기 말소는 각각 보증금 반환과 채무 변제 뒤에 이행한다.

37 채권법 · 계약금 정답 ③

① X 해설 계약금계약은 매매 같은 주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② X 해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나 전부가 무효일 뿐이다(대판 2015다239324).

③ O 해설 계약금계약은 돈이 건네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 약정만 한 단계에선 해약금 해제를 못 하고, 약속한 계약금을 안 주면 그 약정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대판 2007다73611).

④ X 해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대판 97다9369).

⑤ X 해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라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65조 제2항).

38 채권법 · 계약의 해제 정답 ④

① O 해설 해제는 상대방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단독행위라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해제 통지는 허용된다(민법 제543조, 대판 92다28549).

② O 해설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시효를 센다(대판 2009다63267).

38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O 해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지만, 선의라도 현존이익이 아니라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준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8다43175).

④ X 해설 합의해제는 새 계약으로 앞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손해배상 특약이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⑤ O 해설 해제 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라, 계약이 해제되어도 그 가압류는 살아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9다40937).

39 채권법 · 부당이득 정답 ③

① O 해설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갚았다면 스스로 손해를 택한 것이라,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2조).

② O 해설 부당이득 수익자는 선의로 다뤄지므로, 악의라며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라고 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대판 2017다229536).

③ X 해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됐더라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해야 하고,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99다66564).

④ O 해설 착오로 한 비채변제라도 도의관념에 맞으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친족의 부양비를 대준 경우가 그 예다(민법 제744조).

⑤ O 해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 점유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판 2007다8914).

40 채권법 · 공동불법행위 정답 ②

① X 해설 ㄱ은 틀렸다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공동하면 성립한다(대판 87다카2951).

② O 해설 ㄷ만 옳다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전액을 갚은 뒤 나머지 여럿이 지는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대판 2002다15917).

40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ㄱ·ㄴ 모두 틀렸다 — 공동불법행위에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고, 1인의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면책 효력이 있다(대판 87다카2951, 대판 2008다97218).

④ X 해설 ㄷ은 옳지만 ㄴ이 끼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상계는 변제처럼 채권을 실제로 만족시키므로 절대적 효력이 있다(대판 2008다97218).

⑤ X 해설 ㄷ만 옳은데 ㄱ·ㄴ까지 넣었다 — 공동의 인식은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아니고,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을 준다.